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보조금법」 상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8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보조금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6조의2).

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30일-----

-----.

③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¹⁾는 지방보조금의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²⁾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수령자³⁾ 또한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

그런데,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1) 「지방보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 등을 의미함

3) 「지방보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 등을 의미함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⁵⁾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음.

<현행법 및 「행정기본법」 비교>

구분	「지방보조금법」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기간	지자체장 처분 2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처리기간	미규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0일 연장 可)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맞춰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규정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의신청 처리

5) 「행정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⁷⁾ 도 2024.03.26. 「행정기본법」에 맞춰 이의신청 규정을 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기간 연장(「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단서⁸⁾)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7) 「보조금법」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8) 「행정기본법」

「지방보조금법」상 이의신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의신청 통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조금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기본법」의 기간을 따르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본법」과의 법률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통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보조금법」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